



2 이혼

2-2 이혼과 아이

일본의 법률에서는 만 20 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, 친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.

이혼 후 300 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, 호적상 전 남편이 부친이 됩니다(민법 772 조). 실부가 다른 경우에는 친자관계 불존재확인 소송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.

이혼 후 한쪽의 부모가 아이와의 친권 등을 확정 하지 않은 채로 해외로 데리고 갈 경우, 유괴죄가 적용되어, 아이는 바로 본래의 나라로 송환됩니다.(아이의 탈취에 관한 하그조약, 1980)